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16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동물학대 재범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관리 .....  | 3 |
| 2. 동물학대 재범자에 대한 반려동물 기증·분양·판매 금지 ..... | 9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6. 4. 6.
3. 회 부 일 : 2026. 4.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 제한, 정보 관리 및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재범 예방과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 등록·관리하게 하며,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득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 Ⅲ. 검토의견

#### 1. 동물학대 재범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관리(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개정안은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이하 “동물학대 재범자”라 함)에 대하여 판결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범죄 이력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것임.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 행위자에 의한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벌칙의 수위가 매우 다양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금지행위 시 벌칙을 살펴 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동물 유기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각 행위 유형 간 법정형의 차이가 현저함.

【 「동물보호법」 제10조 금지행위 위반시 주요 형량 】

|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 행위                                                           | 위반시<br>형량                            |
|----------------------------------------------------------------------------------|--------------------------------------|
|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br>징역 또는<br>3천만원<br>이하의<br>벌금 |
|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                                      |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2년 이하의<br>징역 또는<br>2천만원<br>이하의<br>벌금 |
|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
|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
|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맹견 유기 제외)                                                      | 300만원<br>이하의<br>벌금                   |

그럼에도 개정안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별적 판단 없이 위반 횟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을 반복한 자와 중한 학대를

반복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2회 이상이라는 횟수 기준만으로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바, 민감한 범죄경력 정보의  
공개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등 유사 신상공개 입법 사례를 참고  
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한편 개정안은 신상정보의 공개(안 제10조의2)와 공개정보의  
등록·관리(안 제10조의3)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는 법익침해의 정도를 달리하는 별개의 조치로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사한 신상정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 분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내부  
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등록제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개제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양 제도를 법익침해의  
정도가 다른 별개의 조치로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음.

## 【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도의 구조 】

| 구분      | 근거 법률                          | 내용                             | 법익침해<br>정도 |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br>등에 관한 특별법<br>제42조 | 유죄판결 확정 시 법무부장관이<br>등록정보 보존·관리 | 비교적<br>낮음  |
| 신상정보 공개 | 아동·청소년의<br>성보호에 관한 법률<br>제4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국민에게<br>공개         | 높음         |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검토해 보자면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헌법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sup>1)</sup>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sup>2)</sup>에 따른 과잉금지원칙<sup>3)</sup>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먼저, 과잉금지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는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의 생명·안전 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물학대 재범자의 신상을

-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2)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3) 과잉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 조치가 목적 달성에 적절하더라도 더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하여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그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 원칙을 뜻함(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헌재 1992. 12. 24. 92헌가8 등).

공개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 학대 행위를 억제하려는 수단도 해당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신상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나 분양·판매 시 확인 의무화라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개정안 내(안 제10조의4)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됨으로써 공개대상자와 그 가족이 감수하여야 하는 사회적 낙인과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에 비하여 일반 공개를 통해 추가로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국민이 열람 가능한 상시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에 한정되어 있으며,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유사 분야에서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또는 범죄경력 요청에 의한 제한적 확인 방식 등<sup>4)</sup>을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에서도 동물학대 범죄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일부 주에 한정되며, 대부분의 국가는 신상정보 공개보다 사육금지명령 등 기능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반면 신상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내부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것은 동물학대 범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 전력 정보를 국가기관이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신상정보 공개와 비교해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 헌법재판소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하여 "신상정보

-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등록은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시<sup>5)</sup>한 바 있어 동물학대 전력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 동물학대 재범자에 대한 반려동물 기증·분양·판매 금지(안 제10조의4 신설)

개정안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기증·분양 또는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취득하려는 자가 동물학대 재범자인지 확인하고, 동물학대 재범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분양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동물학대 재범자의 동물 취득을 취득 단계에서 차단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라는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적 제도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

5)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830 결정

있음.

먼저 개정안은 기증·분양·판매를 금지하는 대상을 공개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동물의 생명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자까지 포함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한편 개정안은 동물학대 재범자의 반려동물 취득을 직접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보호센터장, 보호시설운영자,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 허가자로 하여금 기증·분양·판매 시 취득하려는 자가 동물학대 재범자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기증·분양·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간접적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 경우 해당 제도가 중고거래 플랫폼·SNS 등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아 동물학대 전력자가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반려동물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차단할 수단이 없어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동물학대 범죄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영업자의 확인 의무 및 동물학대 재범자에 대한 기증·분양·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정도의 반영,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 등 민간 영업자로 하여금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타인의 범죄경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민감한 범죄경력 정보에 대한 민간의 직접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내밀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목적 외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민간 영역에서 타인의 범죄 정보를 직접 조회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오남용 및 목적 외 이용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 영업자가 직접 시스템에 접근하기 보다 공공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여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sup>6)</sup> 등

---

6)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장애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할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

안전성이 확보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범죄 경력 조회 방식에 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 요청에 의한 제한적 공개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동물학대자를 대상으로 동물 기증·분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과 함께 논의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유사 「동물보호법」 개정안 】

|    | 조은희(2216685) · 김건(2217186) 의원안                                |
|----|---------------------------------------------------------------|
| 대상 | 동물학대·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br>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은 자                 |
| 내용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br>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기증·분양 금지 |

의 장애인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관할행정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 설&gt;</u></p> | <p><u>제10조의2(신상정보의 공개) ①</u><br/> <u>법원은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u><br/> <u>까지를 위반하여 두 차례 이상</u><br/> <u>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u><br/> <u>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u><br/> <u>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u><br/> <u>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u><br/> <u>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대</u><br/> <u>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u><br/> <u>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u><br/> <u>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u><br/> <u>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u><br/> <u>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u><br/> <u>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u><br/> <u>하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u><br/> <u>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u><br/> <u>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u><br/> <u>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u><br/> <u>정된 때부터 기산한다.</u></p> <p><u>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u><br/> <u>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u><br/> <u>하지 아니한다.</u></p> <p><u>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u><br/> <u>“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u></p> |

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성명
  2. 사진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4. 대상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5. 동물학대 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 ⑤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⑦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3(공개정보의 등록·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공개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신 설>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개정보의 등록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동물학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공개대상자의 공개정보 등록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개정보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반려동물 취득 시 확인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반려동물을 기증·분양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동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공개대상자인지 그 여부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대상자에게는 반려동물을 기증·분양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운영자

|                                                        |
|--------------------------------------------------------|
| 3.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br>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br>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
|--------------------------------------------------------|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425 |
|--------------|